

서울특별시 금천구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번호	2141
------	------

제출일자 : 2021. 10. 7.

제 출 자 : 금 천 구 청 장

1. 제안이유

행정안전부의 ‘민원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자치법규 정비 계획(2020.12.)’ 과제로 선정됨에 따라 상위법인 「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」에 위반된 사항 및 「영유아보육법」에 따른 내용을 정비하고, 법제처의 ‘알기 쉬운 조례 만들기 지원 사업’에 따른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상위법령에 따른 관련 내용 정비

- 1) 「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」 제35조에 위반된 “재위탁 선정 결과 통보 7일 이내에 이의 신청” 과 “이의신청 7일 이내에 통지” 를 삭제함(안 제14조 제6항, 안 제14조제7항)
- 2) 「영유아보육법」 제24조제4항과 동법 시행규칙 제24조제7항에 따라 “재계약” 및 “재수탁” 을 “재위탁” 으로 함(안 제14조제2항, 안 제14조제3항, 안 제14조제4항)
- 3) 「영유아보육법」 제26조제1항과 동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취약보육에 대한 정의를 “영아·장애아·다문화아동·그 밖의 연장형” 으로 함(안 제16조 제2항, 안 제24조제1항제6호)

나. 법제처 ‘알기 쉬운 조례 만들기 지원사업’ 권고에 따른 내용 정비

- 1) 「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」에 따라 “완료되다” 를 “끝나다” 로, “통지하다” 를 “알리다” 로 용어를 정비함(안 제9조제3항, 안 제14조제2항, 안 제14조제3항, 안 제14조제4항, 안 제14조제5항, 안 제16조제4항, 안 제17조)
- 2) 「영유아보육법」 제24조제2항 위반 소지가 있는 “심사항목 배점 및 동점 처리 절차 등 위원회 심의에서 조정” 을 삭제함(안 제13조제4항)
- 3) “센터의 장의 임기는 3년” 을 삭제함(안 제22조제4항)
- 4) “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” 을 추가함(안 제22조의2제5항)
- 5) “영유아보육법령 등 관계법령 준용” 에 대한 내용을 삭제함(안 제27조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- 1) 「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」 제1조, 제3조제1항, 제35조
- 2) 「영유아보육법」 제24조제2항, 제24조제4항, 제26조제1항
- 3) 「지방자치법」 제22조

나. 예산조치: 해당 없음

다. 합 의: 해당 없음

라. 기 타

- 1) 입법예고(2021. 9. 3. ~ 2021. 9. 23.): 의견없음
- 2) 신·구조문대비표: 별첨
- 3)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: 별첨
- 4) 규제사전심사: 원안동의(기획예산과)
- 5) 부패영향평가: 원안동의(민원감사담당관)
- 6) 성별영향분석평가: 원안동의(여성가족과)

서울특별시 금천구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금천구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제3항 본문 중 “통지하여야” 를 “알려야” 로 한다.

제13조제4항 중 “하며, 심사항목 배점 및 동점 처리 절차 등의 구체적인 내용은 위원회의 심의에서 조정할 수 있다” 를 “한다” 로 한다.

제14조제2항 중 “위탁기간 만료로 재계약하고자” 를 “위탁기간이 끝나 재위탁하고자” 로, “위탁기간 만료 3개월” 을 “위탁기간이 끝나기 3개월” 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“만료 된” 을 “끝난” 으로, “재계약” 을 “재위탁” 으로 하며, 같은 조 제4항 중 “재수탁” 을 “재위탁” 으로, “기간 만료” 를 “기간이 끝나기” 로 하고, 같은 조 제5항 중 “통보하되” 를 “알리되” 로, “통지하여야” 를 “알려야” 로 하며, 같은 조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삭제한다.

제16조제2항 전단 중 “영아·장애아·시간연장형” 을 “영아·장애아·다문화아동·그 밖의 연장형” 으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 중 “만료된” 을 “끝난” 으로 한다.

제17조 단서 중 “재위탁기간 만료” 를 “재위탁기간이 끝난” 으로 한다.

제22조제4항을 삭제한다.

제22조의2제5항 중 “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이 되며” 를 “센터의 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” 로, “처리하기 위하여” 를 “처리할” 로 한다.

제24조제1항제6호 중 “영아, 장애아, 시간연장, 방과 후” 를 “영아·장애아·다문화아동·그 밖의 연장형” 으로 한다.

제27조를 삭제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9조(회의) ①·② (생략)</p> <p>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7일전까지 회의의 일시·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<u>통지하여야</u> 한다. 다만, 긴급한 경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</p> <p>④·⑤ (생략)</p> <p>제13조(위탁운영) ① ~ ③ (생략)</p> <p>④ 제3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항목에는 보육관련사업 운영실적, 수탁자의 공신력 및 재정능력, 어린이집 운영계획, 대표자 및 어린이집 원장의 전문성 등이 포함되어야 <u>하며, 심사항목 배점 및 동점 처리 절차 등의 구체적인 내용은 위원회의 심의에서 조정할 수 있다.</u></p> <p>제14조(위탁계약) ① (생략)</p> <p>② <u>위탁기간 만료로 재계약하고자 할 경우 수탁자는 위탁기간 만료 3개월 이전에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</u> 한다.</p>	<p>제9조(회의) ①·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----- ----- ----- ----- <u>알려야</u>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④·⑤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13조(위탁운영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④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한다.</u></p> <p>제14조(위탁계약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<u>위탁기간이 끝나 재위탁하고자</u> ----- <u>위탁기간이 끝나</u> <u>기 3개월</u> ----- -----.</p>

③ 구청장은 위탁기간이 만료 된 기관에 대하여 어린이집 운영 실적, 평가인증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,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재계약할 수 있다. 평가 및 심의를 할 때에는 해당 기관에 영유아 또는 방과 후 아동을 보육 의뢰하고 있는 보호자 및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.

④ 재수탁을 신청한 어린이집에 대하여 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재위탁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.

⑤ 구청장은 수탁자에게 재위탁 심의결과를 통보하되, 재위탁 부결시에는 재위탁 부결사유를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.

⑥ 수탁자는 재위탁 선정 결과를 통보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.

⑦ 구청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수용 여부를 결정하여, 그 결과를 이의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[조항 전부 개정 2011.3.18.]

제16조(수탁자의 의무) ① (생략)

② 구립어린이집 원장은 영아·장

③ ----- 끝난 -----

----- 재위탁 -----.

④ 재위탁 -----

----- 기간이 끝나기 -----

⑤ -----

----- 알리되 -----

----- 알

려야 -----.

<삭 제>

<삭 제>

제16조(수탁자의 의무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 영아·장

애아·시간연장형 보육 등 취약보육을 우선 실시하여야 한다. 또한, 보육의 우선 제공을 준수하고 관내 거주 아동을 우선 보육하여야 한다.

③ (생략)

④ 수탁자는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각종 시설과 장비 및 비품을 구에 반환하여야 한다.

⑤ ~ ⑧ (생략)

제17조(위탁기간) 위탁기간은 위탁일로부터 5년으로 하고,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회에 한하여 재위탁할 수 있다. 다만, 재위탁기간 만료 후에 다시 위탁받기를 원할 경우에는 신규위탁운영체 신청자와 같이 공개경쟁에 참가할 수 있다.

제22조(구성) ① ~ ③ (생략)

④ 센터의 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
제22조의2(운영위원회) ① ~ ④ (생략)

⑤ 위원장은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이 되며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

애아·다문화아동·그 밖의 연장
형 -----.

③ (현행과 같음)

④ -----
----- 끝난 -----
-----.

⑤ ~ ⑧ (현행과 같음)

제17조(위탁기간) -----

-----.
----- 재위탁기간이 끝난 -----
-----.

제22조(구성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

<삭제>

제22조의2(운영위원회) ① ~ ④ (현행과 같음)

⑤ ----- 센터의 장이 되며 부
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-
----- 처

다.

⑥·⑦ (생략)

제24조(비용의 보조 등) ① 구청장은 법 제36조 및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어린이집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정한 비용 중 국고보조금·시비보조금으로 충당하는 부분 이외의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.

1. ~ 5. (생략)

6. 영아, 장애아, 시간연장, 방과 후 보육 등 취약보육운영비용

7. ~ 12. (생략)

② ~ ⑥ (생략)

제27조(준용)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영유아보육법령 등 관계법령과 여성가족부 및 서울특별시 보육사업 지침을 준용한다.

리할 -----.

⑥·⑦ (현행과 같음)

제24조(비용의 보조 등) ① -----

-.

1. ~ 5. (현행과 같음)

6. 영아·장애아·다문화아동·그 밖의 연장형 -----

7. ~ 12. (현행과 같음)

② ~ ⑥ (현행과 같음)

<삭 제>

서울특별시 금천구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발생 요인

- 없음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13조제2항제1호
-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, 한시적인 경비로써
총 3억원 미만인 경우

3. 미첨부 사유

- 본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 이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이 없으므로 「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13조제2항제1호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생략함.

4. 작성자

작성자 이름	여성가족과 보육행정팀 이주은
연 락 처	02-2627-1415

현행조례

서울특별시 금천구 영유아보육 조례

(제정) 2007.04.18 조례 제 492호
(일부개정) 2011.03.18 조례 제 655호
(일부개정) 2014.12.30 조례 제796호 영유아보육법
(일부개정) 2019.07.19 조례 제1040호
(일부개정) 2020.12.31 조례 제1134호

제1장 총 칙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영유아보육법」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의 영유아의 보호와 교육의 질을 향상시킴은 물론 보호자의 경제적·사회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여 가정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2020.12.31>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영유아”란 「영유아보육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. <개정 2014.12.30, 2020.12.31>
2. “보육”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한다. <개정 2014.12.30.>
3. “어린이집”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. <개정 2014.12.30.>
4. “보호자”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. <개정 2014.12.30.>
5. “보육교직원”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직원을 말한다. <개정 2014.12.30.>
6. “방과 후 보육”이란 맞벌이 부부의 자녀 등 방과 후 보호가 필요한 초등학교 아동을 중심으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.
7. “육아종합지원센터”란 법 제7조에 따라 영유아에게 시간제보육 서비스제공,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·제공 및 상담을 위하여 설치·운영하는 육아 지원 기관을 말한다. <개정 2014.12.30, 2020.12.31>
8. 삭제 <2014.12.30.>

제3조(책임)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(이하 "구청장"이라 한다)은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진다.

제2장 보육정책위원회

제4조(설치 및 기능)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 제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(이하 "구"라 한다)

에 서울특별시 금천구 보육정책위원회(이하 "위원회" 라 한다)를 둔다. <개정 2014.12.30.>

1. 보육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
2. 구립 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·위탁에 관한 사항
3.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·위탁에 관한 사항
4. 어린이집 이용자가 납부할 보육료 등에 관한 사항
5. 삭제 <2014.12.30.>
6. 그 밖에 보육에 관하여 위원장 및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

제5조(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.

1. 보육전문가
2.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 대표 <개정 2014.12.30.>
3. 보호자 대표 또는 공익을 대표하는 자
4. 관계공무원

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
④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보육관련 업무 담당공무원이 한다.

제6조(위원의 임기)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,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
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.

제7조(위원의 해촉)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.

1. 위원이 사망·질병·그 밖의 사유로 위원회의 업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
2.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하여 공정한 조정이 어려운 경우
3.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할 경우. 다만, 당연직 위원은 제외한다.
4. 그 밖에 품위 등을 손상하여 위원으로서 부적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
제8조(위원회의 운영 등) ①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를 대표하며,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.

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,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회의록을 작성·관리한다.

제9조(회의)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.

② 정기회의는 연1회 개최하고, 임시회의는 구청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 소집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.

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7일전까지 회의의 일시·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. 다만, 긴급한 경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⑤ 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.

제10조(위원의 수당)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제3장 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 <개정 2014.12.30.>

제11조(구립어린이집의 설치) ① 구청장은 구립어린이집을 설치할 때에는 보육 수요와 이미 설치된 기관의 개수를 감안하여 저소득주민 밀집 주거지역 등 취약지역과 「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가급적 1개동에 1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. <개정 2014.12.30, 2020.12.31>

② 구청장은 보육수요 조사를 실시하여 일정한 수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구립어린이집에 장애아어린이집과 야간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있다.<개정 2014.12.30.>

제12조(구립어린이집의 명칭) 구에서 설치하는 어린이집의 명칭은 "구립○○○어린이집"으로 한다.<개정 2014.12.30.>

제13조(위탁운영) ① 구청장은 구립어린이집을 직접 운영하거나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. 이 경우 최초위탁은 공개경쟁의 방법에 따른다.<개정 2014.12.30.>

② 구립어린이집의 운영을 위탁하려는 경우 구청장은 미리 위탁의 기준, 절차 및 방법 등을 구 게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.<개정 2011.3.18., 2014.12.30.>

③ 구립어린이집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24조제4항 및 「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」(이하 “시행규칙”이라 한다)제24조제2항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, 구청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된 자를 위탁운영자(이하 “수탁자”라 한다)로 결정한다.<개정 2011.3.18., 2014.12.30.>

④ 제3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항목에는 보육관련사업 운영실적, 수탁자의 공신력 및 재정능력, 어린이집 운영계획, 대표자 및 어린이집 원장의 전문성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, 심사항목 배점 및 동점 처리 절차 등의 구체적인 내용은 위원회의 심의에서 조정할 수 있다.<개정 2011.3.18, 2014.12.30.>

제14조(위탁계약) ① 구청장은 수탁자와 위탁기간 중 관리책임 및 그 밖에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서면으로 계약하여야 하며 시설의 보호와 적절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한할 수 있다.

② 위탁기간 만료로 재계약하고자 할 경우 수탁자는 위탁기간 만료 3개월 이전에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.

③ 구청장은 위탁기간이 만료된 기관에 대하여 어린이집 운영 실적, 평가인증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,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재계약할 수 있다. 평가 및 심의를 할 때에는 해당 기관에 영유아 또는 방과 후 아동을 보육 의뢰하고 있는 보호자 및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.<개정 2014.12.30.>

④ 재수탁을 신청한 어린이집에 대하여 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재위탁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. <개정 2014.12.30.>

- ⑤ 구청장은 수탁자에게 재위탁 심의결과를 통보하되, 재위탁 부결시에는 재위탁 부결사유를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.
- ⑥ 수탁자는 재위탁 선정 결과를 통보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.
- ⑦ 구청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수용 여부를 결정하여, 그 결과를 이의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[조항 전부개정 2011.3.18]

제15조(종사자 임면) ① 보육교직원은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 중에서 공개채용한다. <개정 2014.12.30.>

- ② 어린이집 원장은 구청장이 임면한다. 다만, 어린이집을 법인 등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어린이집 원장은 해당 법인 등의 대표자가 임면하되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 <개정 2014.12.30.>

제16조(수탁자의 의무) ① 수탁자는 어린이집을 운영함에 있어 관계법령과 이 조례에 따른 규정 및 구청장의 지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 <개정 2014.12.30.>

- ② 구립어린이집 원장은 영아·장애아·시간연장형 보육 등 취약보육을 우선 실시하여야 한다. 또한, 보육의 우선 제 공을 준수하고 관내 거주 아동을 우선 보육하여야 한다. <개정 2014.12.30.>
- ③ 수탁자는 매년 예산·결산보고서와 사업계획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- ④ 수탁자는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각종 시설과 장비 및 비품을 구에 반환하여야 한다.
- ⑤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할 때에는 정당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.
- ⑥ 시설 및 아동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민·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.
- ⑦ 수탁운영을 이유로 연고권 등의 주장을 할 수 없다.
- ⑧ 수탁자는 구청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의 양도 및 전대는 물론 시설의 구조나 사용 목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.<신설 2011.3.18>

제17조(위탁기간) 위탁기간은 위탁일로부터 5년으로 하고,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회에 한하여 재위탁할 수 있다. 다만, 재위탁기간 만료 후에 다시 위탁받기를 원할 경우에는 신규위탁운영체 신청자와 같이 공개경쟁에 참가할 수 있다.[전문개정 2020.12.31]

제18조(위탁의 취소) ①구청장은 위탁기간 중이라도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.

1. 법규를 위반하였을 때
 2. 기관을 운영할 의사가 없을때 <개정 2014.12.30.>
 3. 제16조 수탁자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
 4. 위탁계약을 위반하였을 때
 5. 1년 이내의 기관운영정지처분을 받았을 때 <개정 2014.12.30.>
 6. 어린이집 원장의 업무정지처분을 받았을 때 <개정 2014.12.30.>
- ② 수탁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탁이 취소된 사실이 있는 경우 그 수탁자에 대하여는 다시 수탁할 수 있는

자격을 상실한다. 이 때 수탁자가 법인, 그 밖의 단체인 경우 그 대표자가 다른 법인 또는 개인의 명의로 다시 수탁을 신청하는 경우도 동일하다.<후단신설 2011.3.18>

③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취소의 사유를 문서로 수탁자에게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.

제19조(지도감독) ① 구청장은 수탁자의 기관운영 실태를 연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·감독할 수 있다. <개정 2014.12.30.>

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점검 결과에 따라 시정지시, 경고, 종사자의 해임 요구 및 변상, 위탁의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.

제4장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<개정 2014.12.30.>

제20조(설치 및 운영) ① 구청장은 법 제7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 육아종합지원센터(이하 “센터”라 한다)를 설치·운영한다. <개정 2011.3.18., 2014.12.30.>

② 센터에는 자료실, 상담실 및 교육실 등을 두어야 하며, 이외에 실내놀이터, 장난감 대여실 등을 둘 수 있다. <개정 2011.3.18., 2014.12.30, 2020.12.31>

③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센터를 「영유아보육법 시행령」(이하 “시행령”이라 한다) 제26조의2에 따라 정부 출연 연구기관, 보육 또는 아동복지 관련 학과 개설 대학, 보육 관련 비영리법인·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. <개정 2011.3.18., 2014.12.30.>

④ <삭제 2011.3.18>

제21조(기능) 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<개정 2011.3.18., 2014.12.30, 2020.12.31>

1. 시간제보육 서비스 제공 <개정 2020.12.31>
2.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
3. 보육프로그램 및 교재·교구의 제공 또는 대여
4. 보육교직원에 대한 상담 및 구인·구직 정보의 제공
5. 어린이집 설치·운영 등에 관한 상담 및 컨설팅
6. 장애아 보육 등 취약보육에 대한 정보의 제공
7. 부모에 대한 상담·교육
8. 영유아의 체험 및 놀이 공간 제공
9. 영유아 부모 및 보육교직원에 대한 영유아 학대 예방 교육
10. 그 밖의 어린이집 운영 및 가정양육 지원 등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22조(구성) ① 센터에는 센터의 장과 보육에 관한 정보제공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육전문요원 및 상담전문요원 외에 전산원, 영양사, 간호사, 그 밖의 직원을 둘 수 있다. <개정 2014.12.30, 2020.12.31>

- ② 센터의 장은 시행령 제14조제1항의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공개채용을 통해 구청장이 임명한다. 다만, 시행령 제26조의2에 따라 위탁 운영할 경우 센터의 장은 수탁체의 대표가 임명하되,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<개정 2011.3.18., 2014.12.30, 2020.12.31>
- ③ 보육전문요원은 시행령 제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, 상담전문요원은 시행령 제1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한다. 다만, 센터를 위탁 운영할 경우에는 보육전문요원 및 그 밖의 직원은 센터의 장이 임명한 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<개정 2011.3.18., 2014.12.30, 2020.12.31>
- ④ 센터의 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 <개정 2014.12.30, 2020.12.31>
- ⑤ 삭제 <2014.12.30.>

제22조의2(운영위원회) ① 센터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(이하 이 장에서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 <개정 2014.12.30, 2020.12.31>

1. 센터의 운영계획수립에 관한 사항
2. 센터의 주요 업무추진에 관한 사항
3. 센터의 장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
4. 삭제 <2014.12.30.>

-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 - ③ 위원회의 위원은 관계 공무원, 보육교직원, 보육과 관련하여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중에서 센터의 장이 위촉한다. <개정 2014.12.30, 2020.12.31>
 -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,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.
 - ⑤ 위원장은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이 되며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. <개정 2014.12.30.>
 - ⑥ 위원회의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 - ⑦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참여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
- [조항신설 2011.3.18]

제22조의3(회원) ① 실내놀이터 이용, 장난감 등을 대여 받으려는 사람은 회원으로 등록하여야 한다. <개정 2020.12.31>

- ② 개인 회원가입 대상은 만6세 미만 취학 전 아동의 직계존속 또는 법정보호자로서 금천구 거주자 또는 금천구 소재 직장인으로 한다.
- ③ 단체 회원가입 대상은 금천구에 소재하는 어린이집으로 한다. <개정 2014.12.30.>

[조항신설 2011.3.18]

제22조의4(사용료) ① 구청장은 센터를 사용·이용하는 사람에게 별표1에서 정한 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. <개정 2014.12.30.>

② 회원이 대여 자료의 반납을 지연할 경우에는 별표2에서 정한 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.

③ 징수한 사용료 등은 동일한 목적을 위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센터에서 세입·세출예산에 편성 운영할 수 있다. <개정 2014.12.30.>

[조항신설 2011.3.18]

제22조의5(사용료의 감면) 구청장은 별표3에서 정한 사람들에게 사용료의 전액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.[조항신설 2011.3.18]

제22조의6(장난감의 기증) 구청장 또는 센터의 장은 많은 아동들이 이용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유관기관, 단체 또는 개인 등으로부터 장난감을 기증 받을 수 있다. <개정 2014.12.30, 2020.12.31>

[조항신설 2011.3.18]

제22조의7(위탁 기간 및 위탁의 취소) 위탁 기간은 「서울특별시 금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9조제2항에 따르며, 위탁 취소는 「서울특별시 금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16조에 따른다. <개정 2014.12.30.>

[조항신설 2011.3.18] [전문개정 2020.12.31]

제23조(지도·감독) 구청장은 수탁자에게 센터의 운영에 관하여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련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기관에 출입하여 기관 직원에게 질문을 하거나, 진술을 하게 할 수 있으며, 장부나 서류, 그 밖의 물건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. <개정 2011.3.18., 2014.12.30, 2020.12.31>

제5장 삭제 <2014.12.30.>

제23조의2 삭제 <2014.12.30.>

제23조의3 삭제 <2014.12.30.>

제6장 비용[제5장에서 이동 2011.3.18]

제24조(비용의 보조 등) ① 구청장은 법 제36조 및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어린이집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정한 비용 중 국고보조금·시비보조금으로 충당하는 부분 이외의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. <개정 2014.12.30.>

1. 어린이집의 설치, 증·개축 및 개·보수비 <개정 2014.12.30.>
2. 교재·교구비
3. 센터의 설치·운영비<개정 2011.3.18., 2014.12.30, 2020.12.31>
4. 보육교직원 인건비 <개정 2014.12.30.>
5. 보수교육, 국내외 연수비 등 교육훈련 비용<개정 2011.3.18>
6. 영아, 장애아, 시간연장, 방과 후 보육 등 취약보육운영비용

7.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아동 및 저소득층 자녀의 보육료
 8. 어린이 관련 행사, 보육교직원 관련 행사, 현장학습, 발표회 등 행사비용 <개정 2014.12.30.>
 9. 보육의 질적향상을 위한 평가인증 지원
 10. 냉·난방비 등 어린이집 운영비 <개정 2014.12.30.>
 11. 영유아 급식과 간식 비용<신설 2011.3.18>
 12. 그 밖에 차량운영비 등 구청장이 영유아 보육의 활성화 및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<개정 2014.12.30.>
- ② 구청장은 어린이집에서 영유아 및 보육교직원을 위한 행사개최 시 차량 및 장소를 제공할 수 있다. <개정 2014.12.30.>
 - ③ 구청장은 보육교직원 교육훈련, 국내외 연수, 선진지 견학, 처우개선 지원, 근무환경 개선 등 보육교직원의 사기진작 및 복리후생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. <개정 2014.12.30.>
 - ④ 구청장은 보육프로그램의 개발과 영유아 보육의 질적 향상에 노력하여야 하며 프로그램 개발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
 - ⑤ 구청장은 모든 어린이집에 대하여 제1항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경우 그 지원방법으로 수탁자, 기관 등의 장 또는 어린이집연합회 등 단체의 대표에게 지원할 수 있다.<개정 2011.3.18., 2014.12.30.>
 - ⑥ 법 제36조 및 시행령 제24조제1항7호의 어린이집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인 보육지원행사 등의 대상, 방법, 범위는 별표 4와 같다. <개정 2014.12.30.>

제25조(보조금의 반환) 구청장은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. <개정 2014.12.30.>

1. 기관운영이 정지·폐지 또는 취소된 때 <개정 2014.12.30.>
2. 사업의 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하였을 때
3.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때

제26조(정산보고) 보조금 등을 지원받은 어린이집 원장 및 단체 대표자는 「서울특별시 금천구 보조금 관리조례」 제13조에 따라 지원 목적내에서 성실하게 집행하고 그 집행결과를 일정기간 내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 <개정 2014.12.30.>

제7장 보 칙[제6장에서 이동 2011.3.18]

제27조(준용)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영유아보육법령 등 관계법령과 여성가족부 및 서울특별시 보육사업 지침을 준용한다.

제28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칙(제492호, 2007.04.18)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일전에 체결된 보육시설의 위탁계약 및 금천구보육정책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그 기간이 만료하는 날까지 효력을 가진다.

제3조(다른 조례의 폐지) 서울특별시금천구립어린이집운영위탁에관한조례는 이를 폐지한다.

부칙(제655호, 2011.03.18)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위탁보육시설에 관한 경과 조치) 이 조례 시행 전에 체결 된 보육시설의 위탁계약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.

제3조(보육정책위원회 위원에 대한 경과 조치)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구청장이 위촉한 보육정책위원회의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.

제4조(보육정보센터 및 영유아플라자의 운영에 관한 경과 조치) 이 조례 시행 전에 보육정보센터 및 장난감나라의 프로그램운영에 따른 회원 가입 및 사용료 징수 등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.

부칙(제796호, 2014.12.30)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(제1134호, 2020.12.31)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표 1] <개정 2014.12.30., 2020.12.31.>

금천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사용료(제22조의4제1항 관련)

구 분	용 도	금 액	비 고
<삭 제>			
부모육아 지원	상담실운영	무 료	
	체험 학습실	영유아 1인 1,000원 이상 3,000원 이내	※ 보호자 및 교사 무료
	장난감, 도서 등 대여	개인 연회비 10,000원 어린이집 연회비 20,000원	1회 3점 어린이집 21일간 대여
	시간제보육	보건복지부 지침에 정한 금액	구립어린이집과 연계

[별표 2] <개정 2014.12.30.>

금천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연체료(제22조의4제2항 관련)

구 분	용 도	연체료	비 고
부모육아지원	장난감 도서 등 대여	200원	1일 1점당

[별표3] <개정 2014.12.30., 2019.7.19.>

시설 등의 사용료 감면(제22조의5 관련)

구 분	대 상 자	비 고
전액감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○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라 보호대상자로 선정된 모.부자 가정 ○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라 등록된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○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또는 그 가족 ○ 자녀 셋 이상이 가족관계로 등록된 다자녀 가족 ○ 「입양특례법」에 따라 자녀를 입양한 가족 	
50% 감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라 등록된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○ 연간 200시간 이상의 자원봉사자 (금천구 자원봉사 등록 회원에 한함) 	

보육지원 행사 등(제24조제6항 관련)

사업명	대 상	시행방법	범위(행사내용)	비 고
보육교직원 연수 및 교육	금천구 보육교직원	구 주관 또는 민간 위탁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대상 : 보육교직원 ○ 보육교직원 연수 및 강사초빙 강의, 교육 	예산확보시 시 행
어린이집 체육대회	금천구 보육아동 학부모, 보육교직원	구 주관 또는 민간 위탁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레크레이션, 게임, 율동, 장기자랑 등 행사 	”
그림그리기 대회	금천구 어린이집 보육아동	구 주관 또는 민간 위탁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축하공연 ○ 그림그리기 ○ 시상 	”
보육교직원 해외 연수	금 천 구 보육교직원	구 주관 또는 민간 위탁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대상 : 보육교직원 ○ 보육교직원 해외선진 어린이집 벤치마킹 	”
보육교직원 표 창	금 천 구 보육교직원	구 주관 또는 민간 위탁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보육교직원 표창 	”

관계 법령

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

제1조(목적)

이 법은 민원 처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민원의 공정하고 적법한 처리와 민원행정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도모함으로써 국민의 권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3조(적용 범위)

① 민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35조(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)

- ① 법정민원에 대한 행정기관의 장의 거부처분에 불복하는 민원인은 그 거부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행정기관의 장에게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.
- ② 행정기관의 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인용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. 다만, 부득이한 사유로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인용 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(起算)하여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, 연장 사유를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- ③ 민원인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「행정심판법」에 따른 행정심판 또는 「행정소송법」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.
- ④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영유아보육법

제24조(어린이집의 운영 기준 등)

-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2조에 따라 설치된 국공립어린이집을 법인·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. 이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에 따라 심의하며, 최초 위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경쟁의 방법에 따른다. <개정 2008. 1. 17., 2011. 6. 7., 2011. 8. 4., 2018. 12. 11., 2020. 12. 29.>
- 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어린이집 위탁 및 위탁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 <개정 2008. 2. 29., 2010. 1. 18., 2011. 6. 7., 2011. 8. 4.>

제26조(취약보육의 우선 실시 등)

-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, 사회복지법인, 그 밖의 비영리법인이 설치한 어린이집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린이집의 원장은 영아·장애아·「다문화가족지원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아동 등에 대한 보육(이하 “취약보육”이라 한다)을 우선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. <개정 2008. 12. 19., 2011. 6. 7.>

지방자치법

제22조(조례)

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. 다만,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.